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2013년 수정판)

(1989년 2월 21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 2002년 4월 28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수정, 2013년 6월 29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의 수정 등 12부의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수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4장 감독관리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의 검사행위를 규정하며 사회공익과 수출입 무역 관련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대외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 수출입상품검사부처(이하 '국가상검부처'라 함)를 설립하여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작업을 주관하게 한다. 국가상검부처가 각지에 설립한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이하 '상검기구'라 함)가 관할지역의 수출입검사작업을 관리한다.

제3조 상검기구와 국가상검부처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검사는 반드시 인체 건강과 동식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상검부처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수출입상품 리스트(이하 '리스트'라 함)를 제정하고 조정하여 실시를 발표한다.

제5조 리스트에 포함된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가 검사를 실시한다.

위의 조항에서 규정한 수입상품이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사용을 금한다. 앞의 조항에서 규정한 수출상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첫 번째 단락에서 규정한 수출입상품 가운데 국가가 규정한 검사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상품의 수화인 또는 상품의 발송인이 신청을 하여 국가상검부처의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제6조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검사는 리스트에 포함된 수출입상품이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합격평정(评定)활동을 의미한다.

합격평정절차에는 표본추출, 검사, 조사, 평가, 검증, 합격보증, 등록, 허가, 승인 및 각 항의 조합이 포함된다.

제7조 리스트에 포함된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적 요구사항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며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적 요구사항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 즉시 제정해야만 한다.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상검부처가 지정한 국가관련표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국가상검부처가 허가한 검사기구는 대외무역관계자 또는 해외검사기구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제품의 검사와 감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법과 행정법에서 기타 검사기구가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또는 검사항목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행정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0조 국가상검부처와 상검기구는 수출입상품검사 관련 정보를 즉시 수집하고 관련 부문에 제공해야만 한다.

국가상검부처와 상검기구의 관계자는 수출입상품검사의 직책을 이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상업적 기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11조 본 법은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세관 관할지의 상검기구에 검역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다. 세관은 상검기구가 발급한 화물세관증명에 따라 검사 후 통과시킨다.

제12조 본 법은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상검기구가 규정한 곳에서 기한 내에 상검기구가 진행하는 수입상품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처가 일괄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본 법은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상품의 수화인이 수입상품의 품질 불합격 또는 하자를 발견하여 상검기구의 배상 증명이 필요한 경우 상검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 증명해야만 한다.

제14조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 플랜트에 대해 수화인은 대외무역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사전검사, 제조감독, 선적감독을 실시하고 주무부처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살피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15조 본 법은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의 발송인 또는 대리인이 상검기구가 규정한 곳에서 기한 내에 상검기구에 검역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처가 일괄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 법이 규정하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세관은 상검기구가 발급한 화물세관증명에 따라 검사 후 통과시킨다.

제16조 상검기구의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수출상품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 세관신고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다시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제17조 위험성이 있는 화물의 수출용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성능감정을 신청해야만 한다. 위험성 있는 화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 사용에 대한 감정을 신청해야만 한다. 합격 감정을 받지 않은 포장용기를 사용한 위험성 있는 화물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18조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식품을 선적한 배나 컨테이너의 운송인 또는 컨테이너 업체는 반드시 화물선적 전에 검사를 신청해야만 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선적이 금지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상검기구는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입상품에 대해 국가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상검부처는 표본추출 검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관련 부처에 표본추출 검사정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상검기구는 대외무역에 있어 필요할 경우 국가의 규정에 따라 리스트에 포함된 수출상품에 대해 출고 전 품질감독관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수출입화물의 수화인과 선적인 대신 대리인이 검역신고 수속을 할 경우 반드시 상검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국가상검부처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거, 심사대조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과 해외의 검사기구가 수출입제품의 검사와 감정 업무의 위탁을 담당하도록 허가한다.

제23조 국가상검부처와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처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구의 수출입상품 검사와 감정업무 활동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을 진행하며 해당 검사 상품에 대해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상검부처는 국가의 통일된 인증제도에 근거하여 관련 수출입제품에 대해 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처와 외국 관련 기관이 체결한 계약 또는 외국의 유관기관의 위탁에 근거하여 수출입제품의 품질인증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에 합격한 수출입

상품이 품질인증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6조 상검기구는 본 법에 의거 허가제를 실시한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증관리를 시행하고 증서와 상품을 대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제27조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수출입상품에 대해 상품검사 합격표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상품의 검역신고자가 상검기구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상검기구 또는 상급상검기구, 국가상검부처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수리한 상검기구 또는 국가상검부처는 곧바로 재검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상검기구, 국가상검부처의 재검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상검기구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국가 상검부처와 상검기구가 직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며 법으로 규정한 직권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며 감독을 실시한다.

국가상검부처와 상검기구는 법에 의거 직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팀 구성을 강화하고 상검 직원이 정치적으로나 업무처리적으로 우수한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상검직원은 정기적으로 업무훈련과 심사를 받아 심사에 합격한 경우 비로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검직원은 반드시 직무에 충실하고 직업적인 도덕을 준수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아야만 한다.

제31조 국가상검부처와 상검기구는 반드시 완벽한 내부감독제도를 수립하여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검기구 내부적으로 검역신고 수리, 검사, 증서발행 등 주요 직위의 직권은 명확히 규정되며 상호 분리되고 상호간 제약을 받는다.

제32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국가상검부처, 상검기구,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에 의거 직책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를 위해 보안을 유지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33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혹은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을 합격검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출한 경우 상검기구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5%이상 2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상검부처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수출입상품 검사와 감정업무에 종사한 경우 상검기구는 불법 영업 종단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불량 또는 가짜가 섞인 상품을 수출입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수출입상품을 합격한 상품으로 사칭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수입 또는 수출 종단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현금가치의 5%이상 3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상검증서, 도장, 표식, 품질인증표식을 위조, 변조, 매매, 절도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검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현금가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국가상검부처, 상검기구의 직원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알게 된 상업적 기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국가상검부처, 상검기구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고의로 난처한 상황을 만들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검사결과를 날조하는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검사 증명을 지연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상검기구와 기타검사기구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와 감정업무를 실시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 비용을 수취한다.

제40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41조 본 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